

제주지방법원 2020. 7. 1 선고 2019나119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20. 7. 1 선고 2019나1190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19. 8. 23 선고 2018가소15690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철

변론 종결2020. 6. 3.

판결 선고2020. 7. 1.

제1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19. 8. 23. 선고 2018가소15690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,282,87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방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조병대

판사문종철

판사류호중